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57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주식회사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신동일

변론 종결2021. 6. 23.

판결 선고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20. 6. 8.에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6. 8. 접수 제10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E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6. 8. 접수 제10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E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의 각 건축주로서 서로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9. 8. 23. D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E는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2.경부터 2020. 4. 18.경까지 136,437,7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D과 E로부터 위 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97,437,700원(= 136,437,700원 - 3,9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2020. 1. 3. 마쳐졌다.

마. D과 E는 2020. 6. 8.경 F조합로부터 각 9억 7,500만 원씩 합계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과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E와 피고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순위 우선수익자를 F조합로 하여 각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은 이 사건 1부동산과 그 부지 이외에, E는 이 사건 2부동산과 그 부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과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주이자 원고에 대한 채무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D과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D과 E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D과 E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가압류와 주식회사 G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었으며, 시공사인 H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D과 E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으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바, 만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D, E가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F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채무상환비용,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및 등기 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된 선의의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신탁법 제8조 제1항), 사해신탁의 경우 악의 여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F조합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인 I조합로서 D, E를 각 채무자로 하여 각 9억 7,500만 원씩 합계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말소 또는 해제되었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가 징구되었으며, 등기부상 D과 E의 채무관계가 나타나 있거나 달리 F조합가 이들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③ 대출금은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 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수익자인 금융기관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D과 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D과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선화

별지